

2015년 IT전략실 종합감사 결과

① 감사개요

○ 감사목적

- IT전략실의 주요업무에 대한 점검을 통해 보다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현안 문제점을 조기에 파악하여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각종 계약 및 예산집행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여 경영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것임

○ 감사기간

- 2015. 3. 23.(월) ~ 3. 27.(금), 5일간

○ 감사 중점사항

- 업무분장, 예산운영 등 전반적 부서 운영 실태
- 자산·계약·보안 관리 업무의 적정성
- 정보시스템 구축·운영 관련 사업 관리의 적정성
- 하도급 관리 업무의 적정성
- 방만경영 예방, 경영지침 및 임직원행동강령 준수 실태

② 감사결과

○ 감사 처분 현황

연번	지적사항	종류	조치사항
1	전산자산 관리 체계 및 관리업무 부적정	주의촉구 주의환기 시정 통보	<p>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정기재물조사 결과보고 시 자산관리대장과 실물자산이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한 관련자들에게 주의촉구 및 주의환기하시기 바랍니다.</p> <p>②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정기재물조사 결과보고 시 자산관리대장과 실물자산 확인 시 컴퓨터 등에 대해서는 RFID카드를 붙여야 하는데도 이를 부착하지 않은 사유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자산관리대장과 RFID 물품관리 리스트가 일치하는 것으로 보고한 담당자에게 주의환기하시기 바랍니다.</p> <p>③ 「자산관리규정」에 따라 전산관련 자산관리가 적절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전산기기 고유식별 정보(예시: S/N)에 기반한 전산자산관리 시행세칙을 수립하는 등 자산관리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p> <p>④ 전산장비의 관리대장상의 미등록, 오등록, 중복 등록된 자산은 올바르게 등록조치하고, 원인 불명으로 확인이 불가능한 업무용PC 등 전산자산 50대에 대해 「자산관리규정」 제25조(손실품에 대한 변상 등)에 따라 손·망실 등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⑤ 서버자산관리 취득 시 세부 내역정보 관리 방안 및 자산관리대장 등재를 위한 일식화 업무처리 기준을 명확히 수립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p>⑥ 「한국장학재단과 한국주택금융공사간 전산장비 일부 매각」에 따라 한국주택금융공사에 매각한 전산자산들을 자산관리대장(SAP)내 매각자산 목록으로 이관하고 철저히 관리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p>

연번	지적사항	종류	조치사항
2	태블릿 PC 등 모바일 전산 장비 관리 부적정	부서주의 통보	<p>① 태블릿PC에 관리번호를 부여하고, 관리대장을 작성한 후 직제개편된 부서에 따라 재배부하는 등 태블릿PC를 철저히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p> <p>② 통신 사용량이 전혀 없거나 사용량이 미미한 태블릿 PC에 대해서는 실제 사용자에게 재배부하거나 요금제를 조정하는 등 효율적 사용방안을 마련하시기 바랍니다.</p>
3	정보시스템 통합유지보수 사업 대가지급 부적정	부서주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재단 「계약규정」에서 정한 기한 내에 대가지급이 이루어지도록 업무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4	하도급 승인 등 하도급 관리 업무 부적정	부서주의	「소프트웨어사업 하도급계약의 적정성 판단기준」의 규정에 따라 평가를 실시하여 하도급 승인 업무를 처리하시기 바라며, 「계약규정」 제103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하도급 대금 지급 확인 업무를 철저히 수행하시기 바랍니다.
5	정보시스템 저장매체 불용 처리 업무 불철저	부서주의	「정보보안 관리세칙」제28조(저장자료의 삭제)에 따라 하드디스크 등 저장매체에 대해서 불용 시 그 결과를 기록 유지하는 등 관리를 철저히 하시기 바랍니다.
6	업무용 컴퓨터와 노트북의 정비 업무 불철저	주의촉구 주의환기 권고	<p>① 전산기기의 정비 용역 결과를 검수할 때에는 「계약규정」제82조에 따라 정비결과를 입증할 수 있는 증빙자료를 제출받아 확인하지 않은 채 검수한 것으로 기안한 담당자에 대해서는 주의촉구 하시기 바랍니다.</p> <p>② 전산기기 정비 검수 관리업무를 제대로 하지 않은 관련자들에게 업무를 철저히 관리하도록 주의환기하시기 바랍니다.</p> <p>③ 「정부물품정비관리규정」에 따른 재단 자체 정비관리규정을 제정하여 장비정비 기록업무를 철저히 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p>